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1. 1. 4.(월) 15:00~21:00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의 장 _____

간 사 _____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 회의 회의록

2021. 1. 4.

운영지원단

I. 개요

- 일시: 2021. 1. 4.(월) 15:00~21: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 허부열(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 배석자
 - 이현환(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권순형(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박노수, 안희길, 김도현, 양석용, 유제민, 배진호, 강정현,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새해 첫 업무일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램. 다들 바람이 같겠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함
 - 2020년을 돌아해보면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고등부장 전용차량 폐지, 민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법화가 이루어지거나 사법행정에서 성과를 내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함. 올해에도 우리가 계획 중인 여러 사법행정 관련 제도개선을



원만히 이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21회계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신규 부의 제안된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 안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2. 2021회계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등 집행계획

가. 기초보고

-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2021회계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보고함

나. 논의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순석 위원
 - 고등부장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직책수당 등 보완조치 방안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함
 - 기획조정실장
 - 고등부장 전용차량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재무당국에서 대가를 줘야만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바는 없다고 보시면 되나, 전용차량을 업무용으로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여, 전용차량의 폐지로 인하여 향후 업무용차량이 부족해질 것을 전제로 차량 구입을 위한 기본경비가 증액되었음
 - 법관 전반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건비 등 증액을 협의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된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하나, 법원 내 인적구성의 변화 등의 상황을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에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고등부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관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음



3.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가. 기초보고

- ▣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기재부와의 인건비 협의 결과, 향후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사항을 보고함

나. 논의

-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 및 의장의 질문,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자료집 10쪽 제1항 전문직위 수당과 제2항 근무기간 별 전문직위 수당 지급액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직위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인데,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월 1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말씀드릴
 - 기획조정실장
 - 제1항은 2021년에 지출될 수 있는 수당의 한도를 의미하고, 제2항은 전문직위 담당 연차에 따라 10만 원, 12만 원, 18만 원, 30만 원, 45만 원 한도로 수당을 더 줄 수 있다는 의미임
 - 의장
 - 그렇다면 1년차인 올해 예산이 1억 7천여만 원이므로 2년차인 내년에는 승급분을 반영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 의장님 말씀이 맞음. 올해는 중간 협의에 의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명세서는 없지만 인건비 중 1억 7천여만 원을 쓸 수 있고, 내년이 되면 2년차가 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아야 되므로 그 부분을 명시해서 기재부에 요구를 하겠다는 의미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관련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직위제는 업무난이도가 있는 직위에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최소 4년 이상 근무하게 하고 있는 제도로써, 사법부 역시 같



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자문회의에서 의결을 하긴 했지만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웠고, 기재부와 명시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바 없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올해 관련 예산은 1억 7천만 원이지만 앞으로의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음. 기초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를 진행했고 자문회의에서 의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음
- 인원도 200여 명이 되고, 수당 및 기타 처우조건에 관한 고려도 있어야 해서 향후 전문직위제 시행이 인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함. 또한 여러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4월까지 제도 설계를 마치고 자문회의에 중간보고를 한 후 7월 1일자 인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관련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여러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원활한 전문직위제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함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202명이라고 나타난 전문직위 인원이 향후 선발할 수 있는 총원인지 아니면 해가 지날수록 추가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을 의미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 전문직위는 직급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처럼 구체적인 법원 및 직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문직위에 포함되는 직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함. 결국 202명은 2021년 사법부에서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상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음
 - 내부적으로 어떤 자리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대우가 필요한 전문직위인



지 확정부터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4개 분야 정도를 생각하고 있음. 전문직위 제 자체는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하지만 4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만으로 스스로 전문직위에 지원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 현재 담당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할지 여부 등 추가로 많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전문직위 담당자에 대한 승진자후보자명부상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논의한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 그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직기간도 4년을 기본으로 할지 아니면 3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사법부만의 특징을 고려하고 내부적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로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받을 예정임

4.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연구·검토 보고(소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가. 기초보고

- ▣ 이현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경과, 인식조사 경과 및 결과,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각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모습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 세미나, 좌담회, 인식조사까지 한 결과



를 충실하게 보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현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1월 1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몇 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 첫 번째는 조금 어렵겠지만 오늘 회의에서 하나의 안 또는 복수의 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하는 것임. 그렇게 되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의견이 나뉠 수 있으나 1차적으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도 있음
 -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 전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추가 연구·검토를 위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임
 - 위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6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 안을 만들어서 조문으로 성안하는 작업을 하고, 올해 9월 이후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 협조해 줄 것을 항상 당부하고 있음. 이런 점 역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은 대법원의 재판 부담을 경감시켜 충실한 재판을 하자는 것이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함
 -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 그룹 전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선호도를 얻은 안이 상고심사제로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국민 중 소송무경험자, 법률전문가 중 변호사는 물론 검사, 법학교수의 경우 상고심사제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고법 상고부 등 방안과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을 합한 선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상고심사제의 경우 원심 기록 없이 상고심사신청서와 같은 일부 서류에 근거하여 상고 본안 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상고허가제와 크게 다르게 느껴지



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되므로, 상고심사제를 채택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충실한 심리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보완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각론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률전문가 중 표본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법관의 경우 상고심사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설문조사 대상의 비중이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 이 부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별위원회에서 상고심사제와 상고허가제의 구별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했는데, 상고심사제가 대법원의 원래 기능인 법률심 기능을 확고하게 자리 잡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위원들이 선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더라도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해당 사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기록이 아닌 2~3쪽 분량으로 그 법률적 쟁점을 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 설문 대상자 중 법관과 검사의 인원 차이가 큰 점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것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 다만 조사를 실시한 외부기관에서 적절히 가중치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표본 수 차이에 따른 왜곡을 예방함으로써 각 표본의 의견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이찬희 위원

- 상고심사제가 기록을 전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사신청서 상 정리된 쟁점을 보고 심사를 한다는 취지라는 말씀인 것 같음
- 변호사협회에서는 상고심사신청서의 법률적 쟁점을 명확하게 추림으로써 법률심인 상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고심에서만끔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음. 이 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별위원회에서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여부에 대해 이야기된 바가 있는데, 도입 시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등 언급이 있었지만 상세하게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었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자료집 54쪽 관련 통계 상 2017년 상고기각 결정률 합계가 77.3%라고 기재되었는데, 이는 합의, 단독, 고정, 군사재판 어느 것의 비율보다도 높아 정확한 것인지 의문임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이 부분은 숫자상 오류가 있는 것 같음.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지향해야 할 상고심 법원의 모습이 어떤지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음. 상고심이 법률심임을 강조한다면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심사제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조한다면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또는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이 적절할 텐데 일반국민 또는 법률전문가의 전체적인 인식을 보면 권리구제보다는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 같음. 따라서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되, 이 경우 사실심의 기능은 2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1,2심 기능 역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이 강화된 모습은 결국 전원합의체인데, 전원합의체를 복수로 운영하거나 대법관 증원을 통해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법률심 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법관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결국 남는 것은 상고심사제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방안인데, 후자의 경우 대법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배제될 수 있어 국회나 국민 동의 여부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결국 상고심사제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음
- 다만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심리불속행 제도가 실패한 원인을 잘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상고사건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불속행 제도



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소부 내에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심에 따라 불속행 여부 기준이 달라지는 등 통일적 기준이 없었으며, 원심 기록 전체를 보고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함에 따른 심리의 비능률성이 커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음

- 결국 상고심사제를 실시하되, 심리불속행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생각한 것은 별도의 상고심사부를 둬으로써 주심에 따라 상고심사 허부결정이 달라지는 것을 막는 방안임. 만약 지금의 대법관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재 3개 소부 외에 별도의 상고심사부를 신설하되 상고심사부 구성원은 기존 3개 소부에서 1인씩 차출하되 소부 주심사건수를 대폭 줄여 운영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대법관 또는 대법원 판사를 증원해서라도 1개부 정도는 통일적으로 상고심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함
- 특정 부 또는 특정 대법관이 상고심사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면 나머지 부는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로 운영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재 대법원 체제 안에서 상고심사부를 두는 방안, 대법관 또는 대법원 판사 증원을 통해 상고심사부를 두는 방안 모두 포괄적으로 상고심사제 틀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함. 향후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음. 예를 들어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원(고등법원 상고부)을 둔다’는 기재를 두고 법률전문가들은 별도 재판부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은 별도의 독립된 상고법원을 두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반 국민이 고등법원 상고부안에 다수 찬성했다는 결과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듭

-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민들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정한 심사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고심사제’보다는 상고 요건만 심사한다는 의미에서 ‘상고요건심사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초창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상고를 넓게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함. 중요한 것은 상고의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민사, 형사, 행정 각 분야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유형별 상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그 예로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상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세 가지 안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상고요건심사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상고요건심사제가 대법원 조직 확대안 등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안을 보완하여 진전된 안을 만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보고를 드리면서 설문내용이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했고,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스크린을 하는 등 애를 많이 썼지만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음
 - 용어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음. ‘상고수리허가제’, ‘상고요건허가제’, ‘상고요건심사제’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가장 포괄적인 ‘상고심사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명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결정해주시면 그에 따라 적절히 바뀔 수 있음
 - 구체적인 상고심사 기준 관련, 박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상고사건의 구체적인 범위 안에 처분적 내용의 행정명령에 대한 심사도 권리상고를 허용하는 등 나름 상고심사 기준을 정했으나, 더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여부



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안이 채택되면 그에 따라 조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실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서 말씀을 폭넓게 들었고, 우리나라의 경험뿐 아니라 외국사례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느라 노력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질문 또는 의견,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이번 논의를 통해 작년 8월 15일 진행했던 토론회도 보고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는 기회가 됐었는데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의 폭이 넓어졌음
- 연구·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외에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의견 청취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했다고 보시면 됨. 특별위원회 자체에서 따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은 바는 없음

○ 이미경 위원

- 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는지?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단호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원 11분 모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시민단체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셨다고 생각함

○ 이미경 위원

- 특별위원회 위원 11분이 물론 전문가들이겠지만 추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
- 또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은 상고심사제보다는 고등법원 상고부안을, 법



를전문가는 상고심사제 방안을 선호하셨는데, 양 집단 간 의견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논의를 하셨는지?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당연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은 지역별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의 상고심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하였음
- 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특정 위원께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은 법률의 해석 적용의 불통일 가능성은 물론 기타 사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음. 그래서 어떤 위원도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대해 오롯이 동의하지 않았고,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과 상고심사제 방안을 결합하는 방안, 민사와 형사를 나누어 제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미경 위원

- 방금 이찬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률전문가 그룹 중 판사 직역의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58%로 가장 높고, 판사 직역의 경우 상고심사제 방안 선호 비율이 높게 나와 전체적으로 상고심사제 방안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는데, 판사 비율이 크지 않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셨는지 궁금함
- 설문조사를 했지만, 설문조사결과보다는 특위위원 중 6분이 상고심사제를 선호해,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 않았나하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 말씀드립니다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역별 표본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검사 직역 인원은 판사 직역 인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데 설문조사 용역 담당자가 표본수에 따른 오류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법을 썼던 것 같음. 그 부분은 통계학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이라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표본 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특별위원회 나름대로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토론을 많이 진행했음. 일반 국민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하게 선호하거나 주관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다음으로 상고심사제 방안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온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만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시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음
- 이미경 위원
 - 사법연감을 보면 2017년 민사 상고심 파기율이 6%임에 비해 2018년은 11%로 증가하였는데, 이런 점을 보면 당사자인 국민은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상고심 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의 경우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고등부장제 폐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연구 결과 보고 자료에 없는 것 같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말씀하신 부분, 예컨대 대법원장 인사권 강화 또는 고등부장 폐지 무력화와 같은 문제점 등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음. 그 부분에 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음
- 이미경 위원
 -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를 보게 됨.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급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들은 진행된 것이 있는지 질문드림. 대법원에서 몇 년 전부터 하급심 강화(‘하급심충실화위원회’ 등) 논의들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본인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첫 회의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음. 1948년 사법부가 설립된 이후 기본 틀에 관한 한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사법부 자체 예산 편성권이 없음은 물론 사법부 2020년 예산이 정부 예산의 0.39%에 불과하며, 독자적으로 사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조차 되어 있지 못한 점을 대전제



로 삼아야 한다는 점임. 9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환기를 하면서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안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음

- 현재 1심 법관의 한 달 처리 사건수가 90~100건에 이르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의 연간 1인당 부담 사건수가 4,000건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보면 사법부가 삼권의 행사 주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으로 그야말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개헌을 통해 사법부 예산편성권도 생기고 획기적으로 법관을 증원하여 하급심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 하에서 당사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상고제도 개선점을 찾고자 나름 애를 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틀 안에서 그나마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아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됨.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미경 위원

- 의장님께서 서두에 오늘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성안 단계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연구 검토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줄 것을 제시하셨는데, 비록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진행하셨지만 대법원 제시안의 국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등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방침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순석 위원

- 어려운 연구·검토 진행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음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안이 선택되면 그에 따라 법안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음. 다만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이는 법률전문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영역이므로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그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점을 보여줘야만 우리의 안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음
- 법률전문가 약 1,500명, 일반 국민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검토에 반영하느라 나름 고생하셨는데, 국민 입장에서 상고제도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겨우 그 인원에 대한 설문조사로 정당성을 주장하느냐고 비판을 할 소지도 있다고 보임. 따라서 비록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안 자체의 장단을 떠나 되도록 많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서 도출된 안이라는 점이 조금 더 보고서에 현출됐으면 좋겠음

-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대법원에 사건이 많다고 하는데 대법원이 사실 심에 대한 심리를 열어놓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는 것임. 채증법칙 위반임을 이유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증법칙 위반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 심의 취지에 맞지 않게 대법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다보니 교육지책으로 상고심사제가 다수안이 된 것은 아닌가 싶음
- 상고제도 개선 논의가 법원 또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충분히 진행된 것 같지만, 법체계를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송에서의 토론 등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질의응답, 의견 교환이 될 필요가 있음
- 조속히 상고제도 개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입법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전에 언론 등을 통해 본 논의가 이슈화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드립니다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작년 8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9월 이후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법률방송에서 토론회 이후 지상파에서도 토론회 등을 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위원장의 역량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음. 다만 위원들은 물론 실무지원팀에서도 토론회 등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해도 더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긴 했음
- 법률방송에서의 토론회를 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하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 상고제도 개선 문제가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국민에게 바로 와 닿지 않는 면이 있다 보니 본 사안에 대해 국민 전체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명의 나머지



지 위원들께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나름 분석하고 서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앞서 이찬희 위원님이나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의 의미 또는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나 평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음. 비록 표본 수 차이에 따른 왜곡 수정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안이 3가지이고, 소위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상고심사제 방안이 다수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3가지 안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함이 없이 설문에 응할 수 있다는 비판 역시 가능함
-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 안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오는 경우 그 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세 가지 안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비록 다수안이라 할지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따라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진행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두 가지 정도로 더 안을 압축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한 대규모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다음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우선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은 4심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부적이긴 하나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 중 대법원 판사의 자격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자격자로 하는 것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반영해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은 비록 대법관의 의견이 소수의견인 경우에는 대법관재판부로 필요적으로 회부한다 하더라도 과연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합의재판부의 성격과 맞는지, 실질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지난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질문 또는 의견,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



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허부열 위원

-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순수하게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을 주장하는 분은 없이 상고심사제와 결합하여 주장하는 분만 계시는 것 같음. 그렇다면 큰 틀에서 상고심사제 방안과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이 남고, 상고심사제 안에 형사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를 받아들여자는 안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상고심사제를 찬성하는 인원이 9명이고 반대하는 인원이 2명이 되는 것인지?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상고심사제 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상고심사제 범주 내의 세부적 변형 방안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음. 다만 상고심사제와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이 결합된 안(형사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를, 민사 등 사건에는 상고심사제를 도입)은 고등법원 상고부 안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의 안으로 분류하게 된 것임

○ 허부열 위원

- 상고심사제에 반대하는 2명은 대법원 규모 확대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위원님 말씀이 맞음. 2명의 의견은 현재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법원 규모만 확장하자는 것임

○ 허부열 위원

-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이 고등법원에 상고부의 처리 대상을 형사사건에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형사를 구분하게 된 취지는 자료집 3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음

○ 허부열 위원

- 상고심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상고심사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면 대법원의 업무가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 또는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을 가미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이 상



고법원 추진에 대해 반발했던 점에 비추어 아직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두 가지 안 중에서는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가미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짐

- 결국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은 세 가지 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안으로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듦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주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고심사제 틀 안에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도입하는 방안과 고법 상고부 방안 틀 안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주장했던 위원이 설문조사 이후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기본으로 하고 상고심사제를 가미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를 별도 안으로 마련하게 되어 결국 상고심사제 틀 안에서 대법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 틀에서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현재 체제에서 대법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3가지로 나누게 되었음
- 허부열 위원
 - 3가지 안 중에서 처음에 상고심사제만 주장했던 분들은 상고심사제만 도입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처리 부담의 가중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음
 - 상고심사제를 주장하는 위원들의 기본 출발점은 상고 자체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원심 기록 전체가 아닌 상고심사신청서에 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원심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에 의하자는 취지가 주었음. 하지만 이후 회의에서 상고심사제를 기본으로 하되 대법원 규모 확대를 하는 경우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이라고 논의가 진전되었고,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중에서는 현행 소부 방식을 유지하자는 위원보다 대법원 규모를 확대하여 이원적 재판부에서 본안 전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이 다수였음
- 허부열 위원
 - 본인은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되, 상고심사제에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가미하는 방안 및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을 가미하는 안 2개로 정리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그렇다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상고심사제 도입 필요 여부를 기본으로, 부가적으로 상고심사제 틀 안에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 및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의 도입 여부를 쟁점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포괄적으로 상고심사제 방안 안에 고등법원 상고부 가미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가미 방안, 현행 소부 방식 유지 가미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음.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강조하는 위원이 있어 상고심사제 방안이 아닌 독자적인 안으로 설정하게 된 것임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구체적인 안마다 본인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음
-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과 상고심사제 방안을 혼합하는 안은 형사사건에서의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보다는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단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민사사건 당사자에 비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구제 기능이 후퇴할 수 있어 논의의 근거와 결과가 상반된다고 생각함
-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고심사제 방안이 타당해 보이나, 그 안에서 상고심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생각함. 결국 법률심이라고 할 수 있으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애초부터 걸러서 대법원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거르는 범위가 커질수록 상고허가제 쪽으로, 범위가 작아질수록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고요건심사제로 가게 될 것임
- 상고심사제 방안 관련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상고심사 유형을 필수심리사건, 권리상고사건, 심사상고사건으로 분류는 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심사상고사건을 어떻게 거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덜 된 것 같음. 오로지 상고요건심사만 내용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재량 또는 판단여지를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일부 거르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함

- 요컨대 본인은 상고심사제도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심사상고사건을 어떤 기준에 의해 걸러내야 할지에 대해 조금 더 연구·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고,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 및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심사상고사건의 상고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의원들 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음
- 다수의 위원이 다섯 가지 정도 사유를 제시했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상고제한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말씀하신 것처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후 조문성안 작업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상고요건심사제의 경우 초반에는 상고의 대상이 넓어 업무 부담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고 자의적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상고의 요건 또는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처분적 법규명령 관련 사건은 당연히 대법원에서 처리하고,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인 경우에는 상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음
- 혹시 1심과 2심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 필요적으로 상고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는지? 1심과 2심 결과가 다른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검토를 진행했으면 좋겠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음
 - 만약 2심에서 1심을 파기했는데 2심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상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성안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다른 경우’라고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심의 결과가 1심의 결과와 다르게 된 사유가 합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 경우 무조건 상고심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음
- 박균성 위원
 - 그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심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지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 경우 무조건 상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님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운영지원단 중 한 분이 주신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 예산 등 여러 제약 때문에 상고제도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면 상고제도 개선보다는 오히려 법관 증원, 물적 지원 등을 통한 사실심 강화에 방점을 두어야 하고, 상고제도 개선을 명목으로 사실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지만 지금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음.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해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연구·검토 내용을 보충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의견수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촉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몇 가지밖에 할 수 없었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식조사를 단순 앙케이트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고, 설문조사 전문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심층설명을 통한 조사를 실시했고, 법관 직역의 표본 수가 많은 점 역시 고려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했을 것임. 인식조사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계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대법원 홈페이지에 인식조사와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전체 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니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법률전문가 중 법관 직역의 인원이 많긴 하지만 찬성 비율은 인원의 다과와 상관없이 같은 비중을 둔 결과임. 자료집에 모두 같은 비중을 뒀을 때의 비율을 적시하지 않아 혼선을 드리게 된 것 같음
- 인식조사 관련,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단순히 설문조사지를 배포하여 결과를 수집한 것은 아님. 설문조사 전문가가 직접 설명을 해 준 후 답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자가 각 방안의 의미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생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미경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상고제도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연간 4,000건이 넘는 상고사건을 현재의 수준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평균 경력 15년 전후의 법관 약 100명, 비법관 연구관 30명이 대법원에 근무해야만 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상고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경감이 이루어진다면 100명 이상의 우수한 법관을 1심 법관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심 충실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임.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이 용인해줘야 하는데, 심리 지연에 대한 비판 역시 많기 때문에 결국 밑돌을 빼서 위에다 고아놓은 형국이 된 현실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바로 상고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음
- 본인 역시 사실심 법관 충원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지만 경력법관제로 인해 법관으로 임용할 인재 풀이 적다는 난점이 있음. 예전처럼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면 연간 200명 또는 300명 이상의 인원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지만, 현재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이



되면 법조경력 7년 이상이 필요하게 되고, 시뮬레이션 결과 계속해서 요구 법조 경력을 충족한 선발 가능 인원은 줄어들게 됨.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상고제도 개선과 같이 법관 충원 문제 역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

- 본인이 시무직사는 물론 법관이나 법원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재판은 1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이기에 때문에, 상고제도 개선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 역량을 사실심 충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법관의 정원을 늘려야 할 것이고, 법관이 되기 위한 요구 법조 경력을 7년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7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등 경력법관제와 관련해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비법관 위원님들과 법관 위원님들의 의견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음. 비법관 위원님들은 국민정서 부분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상고심제도의 변화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허부열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안을 융합한 안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하나의 안을 선택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 역시 오늘 하나의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함. 아직 추가로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어떤 안건을 채택하지는 않고 중간보고 정도만 있을 것이라 알고 참석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하나의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 설득에 결코 순기능을 할 것 같지 않고, 관련 내용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물론 대법관회의에 보고가 되지도 않았음
- 일단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나 기타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추가 연구·검토를 하신 다음 추후 자문회의에 보고하고, 대법관회의 관련 부분은 대법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다. 결정사항

- ▣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 가지 상고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증원 포함) 방안을 보고받음
- ▣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한 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의견 수렴 결과까지 충분히 참고하여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검토를 실시한 뒤 이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5.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규 안건 제안: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가. 제안 설명

- ▣ 오승이 위원(대표제안 위원) 제안 설명

나. 논의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해서는 업무용 가상PC를 각 법관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음.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 두 번째는 보안의 문제, 세 번째는 형평의 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보안의 문제가 가장 큼
 - 최근 재택근무로 인한 해킹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해킹 등을 통해 법원 업무에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도 어렵거니와, 유출된 정보를 통한 금전거래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것임. 현재 대법원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건 이상 해킹 시도가 들어오고 있고, 비록 대법원의 방화벽이 워낙 튼튼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단계의 방화벽이 뚫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을 법관들의 편의 증대 차원에서만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 본인이 전산정보국의 1차적 보고는 받긴 했으나, 우선 다른 국가기관, 보안이 중요한 금융회사 등 민간기업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보안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음

- 사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재택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긴 함. 또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복무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시행하고 있는 육아기 자녀를 둔 법관의 재택근무 사용 실태 등을 3월 회의에서 전산정보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재택근무를 확대할지 여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음. 오승이 위원님 어떠신지?

■ 오승이 위원은 의장의 제안에 동의하였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및 의장의 답변, 의장의 질문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및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역시 보안 문제가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긴 함
- 다만 민사의 경우 전자소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형사의 경우 사본화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아 그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형사사건도 전면적인 사본화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형사재판부 판사들도 수월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 것임

○ 의장

- 외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릴. 민사는 전자소송화 되었기 때문에 소송기록을 바로 USB에 다운받아서 시스템 연결 없이 재택에서도 볼 수 있는데, 형사는 전자소송이 아직 도입 전이라 종이기록을 스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캔화를 통한 전자사본화가 되지 않은 형사사건기록은 재택에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형사기록을 스캔화하는 비용과 인력이 올해 늘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 그렇지 못함. 향후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사본화는 의미가 없어질 예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본화는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사본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함. 작년 정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의장

- 재작년보다 작년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고, 몇 개 재판부에서 사본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재작년보다 작년 예산이 증액되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사건의 50% 정도는 전자사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경력대등부인 형사항소부는 거의 100% 전자사본화가 이루어졌음
- 다른 법원에서도 전자사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과 올해 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재배정한 실정임

○ 의장

- 형사전자소송 진행 경과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작년 초부터 법무부 형사사법협의회에 안건 논의 제안을 하는 등 노력을 통해 작년 4월 법무부에 법률안 성안을 위한 TFT가 만들어졌고,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 간 협의를 통해 법률안이 완성되었음.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현재 최종 발의 직전단계에 있는 상황임
- 현재 기재부와 관련 예산 협의 최종단계에 있고, 협의가 되는 경우 빠르면 1월 초 국회에 정부안으로 발의가 될 예정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결정은 이미 다 마쳐졌고, 올해 기초설계 작업인 BPR/ISP 플랫폼 구축 작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황임. 추후 더 많은 예산을 차례로 확보할 예정인데, 올해 법률안이 통과되면 예산의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 현재 기재부와 법무부 간 예산 협의가 덜 돼서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못하고 조금 늦어진 상황인데, 아마 1월 내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음



6.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1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2021회계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비공개
2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공개
3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공개
4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공개
5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	비공개

7.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1차 회의록 작성 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안건에 관한 일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 17:30경 정희(김순석, 박균성, 이미경, 이찬희 위원 이석)

※ 17:45경 속회

8.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배진호 인사심의관, 강정현 인사담당관, 서현웅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가. 기초발제

- ▣ 권순형 분과위원장,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 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③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④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⑤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⑥ 고



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⑦ 지원장 보임, ⑧ 장기근무법관 선정(이상 논의 순서에 따름)

나. 결정사항

- 위 8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음(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 논의 시에는 인사상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실명을 배제하고 익명으로 논의를 진행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1. 3. 11.(목) 10:00
- 장소: 대법원

(끝).